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2021. 5.1. ~ 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중순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홈택스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 상담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번없이 126번  
②번 누른 뒤 ⑤번 장려금



##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sup>4)</sup>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 <sup>1)</sup>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인당 50~70만원
	홀벌이 가구 <sup>2)</sup>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맞벌이 가구 <sup>3)</sup>	3,600만원 미만	3~300만원		
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자녀장려금) '20.12.31.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재산요건	'20.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기타요건	1)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 공통사항

-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2. 1. 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0.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모의계산(화면우측 하단)」에서 가능

## 유의사항

- ①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④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합니다.
- ⑤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⑥ 국세채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총당 후 지급합니다.